

대구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2나3210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2나321052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14 선고 2021가단568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단체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2. 11. 16.

판결 선고 2022. 12. 7.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14. 선고 2021가단568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11.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20. 11. 4. 접수 제104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의 'E'을 모두 'C'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치봉

판사서영애

판사김형태

별지